

설문지 번호				
온라인조사 주소	http://gwfri.gwd.go.kr (강원도여성가족연구원)			
홈페이지에 설문지 탑재				

## 제2차 강원도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처우 실태조사 -종사자용-

안녕하십니까?

강원도여성가족연구원은 강원도청 소속으로 강원도의 여성·가족·복지문제를 연구하고 정책을 개발하는 전문연구기관입니다.

본 연구원에서는 「강원도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에 근거하여, 강원도 사회복지시설 종사자의 보수수준 및 근로환경에 관한 기초자료를 수집하고자 설문조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본 조사에 제시해주신 귀하의 의견은 향후 도내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처우개선 정책을 수립하는데, 근거자료로 소중한게 활용될 것입니다.

응답해 주신 모든 사항은 통계법 제33조(비밀 보호)에 따라 전적으로 통계목적으로만 사용되며, 응답자의 개인정보는 철저히 보호됨을 약속드립니다. 바쁘시더라도 시간을 내어 설문조사에 응답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귀하의 협조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2019년 7월

▣ 조사수행기관 : 강원도여성가족연구원

▣ 조사담당자: 송민경 연구위원

※ 조사관련 문의 : 강원도여성가족연구원 연구개발부 (☎ 033-248-6322)

응답 방식은 ① 온라인조사(홈페이지 배너창), ② 전자메일(직접 입력 혹은 스캔 후 발송), ③ 우편 중 가장 편리한 방법으로 선택하시면 됩니다.

전자메일: <buta79@korea.kr>, 우편: <강원도 춘천시 외솔길 25 강원도여성가족연구원 연구개발부>



강 원 도  
강원도여성가족연구원



## B. 종사자 처우수준 및 욕구

10. 귀하께서는 자신의 업무가 ‘국가 사회복지서비스 제공’이라는 목표에 어느 정도 기여한다고 생각하십니까?

- ① 아주 많은 영향을 미친다고 생각한다.
- ② 많은 영향을 미친다고 생각한다.
- ③ 보통 정도 기여한다고 생각된다.
- ④ 조금 기여한다고 생각된다.
- ⑤ 기여하는 바가 아주 적다고 생각된다.

11. 사회복지시설 종사자의 처우를 공무원 보수와 비교했을 때, 귀하는 다음 직위별 비교대상에 얼마나 동의하십니까?

종사자 규모 및 경력 기준: 관장/원장급 5~7급, 국장/부장급 6~7급, 과장급 7급,  
대리/선임생활지도원급 8급, 사회복지사/생활지도원급 9급

- ① 매우 동의함 (→12번으로 갈 것)
- ② 대체로 동의함 (→12번으로 갈 것)
- ③ 보통임 (→12번으로 갈 것)
- ④ 대체로 동의하지 않음 (→11-1번으로 갈 것)
- ⑤ 절대 동의하지 않음 (→11-1번으로 갈 것)

<예시: 서울시 사회복지시설종사자와 공무원 간 비교직급 설정 기준>

공무원 비교직급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직급·직위			비교직급 설정 기준	
	직급	이용시설	생활시설	종사자 규모	경력
5급 (도: 계장, 시군: 과장, 계장)	1급	관장, 원장	원장	10인 이상	15년 이상
				10인 미만	25년 이상
6급 (도: 주무관, 시군: 계장, 주무관)	2급	관장	원장	10인 이상	15년 미만
		부장	사무국장	10인 미만	15~25년
7급	3급	관장, 원장	원장	10인 미만	15년 미만
		부장	사무국장	-	13년 이상
		과장	과장	-	13년 미만
8급	4급	대리	선임생활지도원	-	-
9급	5급	사회복지사, 간호사, 물리치료사, 영양사	생활지도원	-	-
9급(96%)	6급	간호조무사, 조리사, 안전관리인, 사무원, 운전기사	관리인	-	-
9급(93%)		7급	생활보조원, 취사원, 관리인, 환경미화원	기능직	-

※직급 - 일의 종류, 난이도, 책임 정도 등을 토대로, 7개의 등급으로 구분

11-1. (동의하지 않는 경우) 만약 공무원 비교직급 기준에 동의하지 않으신다면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해당되는 것에 모두 표시해 주십시오.

- ① 공무원에 비해 종사자의 경력기준이 낮다.
- ② 공무원에 비해 종사자의 경력기준이 높다.
- ③ 시설의 종사자 규모에 따른 기준(10인)이 비합리적이다
- ④ 시설의 종사자 규모 기준에 따라 차이를 두는 것은 바람직하다
- ⑤ 기타 (적을 것: \_\_\_\_\_)

12.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보수수준 개선을 위해 어떤 것이 가장 시급하게 해결되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우선순위로 2가지만 작성해 주십시오.

1순위( ) 2순위( )

- ① 보건복지부 인건비 가이드라인수준 상향 및 준수 의무화
- ② 사회복지시설 단일 급여체계 구축을 통해 시설 간 종사자 보수수준 격차 최소화
- ③ 정부(지방자치단체)의 보조금 지급방식을 포괄보조금방식에서 분리지급 방식(사업운영비와 인건비 분리)으로 변경
- ④ 적은 기본급과 다수의 수당체계로 이루어진 보수체계개선
- ⑤ 보조금 지급 주체를 지방정부에서 중앙정부로 전환
- ⑥ 종사자 인건비와 관련하여 현장 종사자와 협의할 수 있는 시스템 마련
- ⑦ 사회복지 분야별로 상이한 경력인정 지침의 통일성 확보
- ⑧ 시설별 최소 승진연한 기준 마련 및 직급별 자격기준 강화
- ⑨ 법정수당의 보조금 집행 인정(연월차 수당, 시간외 수당 등)
- ⑩ 기타 (적을 것: \_\_\_\_\_)

13. 귀하는 자신보다 처우가 열악한 종사자에 대한 우선적인 지원(처우개선)에 어느 정도 동의하십니까?

- ① 적극적으로 동의한다 (→14번으로 갈 것)
- ② 동의한다 (→14번으로 갈 것)
- ③ 동의하지 않는다 (→13-1번으로 갈 것)
- ④ 전혀 동의하지 않는다 (→13-1번으로 갈 것)

13-1. (동의하지 않는 경우)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자유롭게 적어주십시오.

14. (2018년 기준) 귀하의 사용가능한 연간 총 휴가 일수 및 실제 사용한 휴가 일수는 각각 며칠입니까?

사용가능한 휴가 일수	실제 사용한 휴가 일수
총 _____ 일	총 _____ 일

15. 만약 귀하가 법정휴가제도 사용을 희망하였으나 보장받지 못한 적이 있다면 그것은 무엇이며 이유는 무엇입니까?

15-1. 보장받지 못한 법정휴가제도는 무엇입니까? 해당되는 것에 모두 표시해 주십시오.

- ① 없음
- ② 연차유급휴가
- ③ 보건휴가(무급휴가)
- ④ 출산전·후휴가

15-2. 법정휴가제도를 보장받지 못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해당되는 것에 모두 표시해 주십시오.

- ① 과도한 업무량/업무공백
- ② 기관·상사·동료 간에 눈치가 보여서
- ③ 급여삭감·실적 하향 등 불이익
- ④ 법정휴가제도에 대해 잘 모름
- ⑤ 개인 및 5인 이하 사업장
- ⑥ 기관에서 휴가사용 거부·축소시행
- ⑦ 기타 (적을 것: \_\_\_\_\_)

16. 종사자를 위해 반드시 시행되었으면 하는 휴가 및 복리후생제도는 무엇입니까?

우선순위로 2가지만 작성해 주십시오.

1순위( ) 2순위( )

- |                    |               |          |
|--------------------|---------------|----------|
| ① 자녀 학자금           | ② 본인 학자금      | ③ 근로자 대출 |
| ④ 경조사비             | ⑤ 체력단련비       | ⑥ 교육훈련비  |
| ⑦ 휴양시설             | ⑧ 직원휴게시설      | ⑨ 동호회 지원 |
| ⑩ 연차유급휴가           | ⑪ 유급보건휴가      | ⑫ 출산전후휴가 |
| ⑬ 유산·사산휴가          | ⑭ 육아휴직        | ⑮ 안식휴가제  |
| ⑯ 진료휴가(본인 및 가족)    | ⑰ 임신기간 단축근로제도 | ⑱ 직원포상제도 |
| ⑲ 기타 (적을 것: _____) |               |          |

17. 귀하는 지금까지 이직경험(직전 직장에서부터 현 직장으로 전입)이 있습니까?

- ① 예 (→17-1번으로 갈 것)
- ② 아니오 (→18번으로 갈 것)

17-1. 현 직장이 몇 번째 직장입니까? (해당숫자만 기입) \_\_\_\_\_ 번째 직장

17-2. 직전 직장에서 사회복지부문 내에서의 이동 사회복지부문 외에서의 이동

- |  |   |
|--|---|
| <p><b>현 직장으로의 전입 형태</b></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① 공공(전담공무원)→현 직장</li> <li>② 민간(타 복지시설)→현 직장</li> <li>③ 기타→현 직장</li> </ul>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④ 공공(일반행정직 등)→현 직장</li> <li>⑤ 비영리(시민단체 등)→현 직장</li> <li>⑥ 영리(기업체 등)→현 직장</li> <li>⑦ 기타 → 현 직장</li> </ul> |
|--|---|

17-3. 전입 사유

- |   |  |
|---|--|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① 보수수준의 적정성 문제</li> <li>③ 의사소통 문제(직장상사, 동료 등)</li> <li>⑤ 의사결정구조의 비민주성</li> <li>⑦ 근무시간 문제</li> <li>⑨ 결혼, 임신, 육아 등의 문제</li> <li>⑪ 계약 종료(담당 업무 및 프로젝트 등의 종료)</li> <li>⑫ 인사이동</li> </ul>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② 근무환경 및 복리후생제도 부족</li> <li>④ 조직의 발전 전망 및 비전 부족</li> <li>⑥ 업무내용의 부적절성 (부적절한 업무, 업무과중 등)</li> <li>⑧ 조직의 이미지(수준)가 좋은 곳을 선호</li> <li>⑩ 개인적인 휴식 및 재충전</li> <li>⑬ 기타( )</li> </ul> |
|---|--|

1순위( )

2순위( )

18. 귀하는 현재 직장에서 이직할 의도가 있습니까?

① 예 (→18-1번으로 갈 것)

② 아니요 (→19번으로 갈 것)

18-1. 희망하는 사회복지부문의 이동

- 이직 분야**
- ① 현 직장→공공(전담공무원)
  - ② 현 직장→민간(타 복지시설)
  - ③ 현 직장→기타

사회복지 이외의 부문으로 이동

- ④ 현 직장→공공(일반행정직 등)
- ⑤ 현 직장→비영리(시민단체 등)
- ⑥ 현 직장→영리(기업체 등)
- ⑦ 현 직장→기타

18-2. 이직 희망 사유

- ① 보수수준의 적정성 문제
- ② 근무환경 및 복리후생제도 부족
- ③ 의사소통 문제(직장상사, 동료 등)
- ④ 조직의 발전 전망 및 비전 부족
- ⑤ 의사결정구조의 비민주성
- ⑥ 업무내용의 부적절성 (부적절한 업무, 업무과중 등)
- ⑦ 근무시간 문제
- ⑧ 조직의 이미지(수준)가 좋은 곳을 선호
- 1순위( ) ⑨ 결혼, 임신, 육아 등의 문제
- 2순위( ) ⑩ 계약 종료(담당 업무 및 프로젝트 등의 종료)
- ⑪ 개인적인 휴식 및 재충전
- ⑫ 인사이동
- ⑬ 기타( )

19. 다음은 귀하의 직업에 대한 항목별 만족도를 알아보기 위한 문항입니다. 해당하는 것에 표시해 주십시오.

내용	매우 불만족	불만족	보통	만족	매우 만족
① 보수/수입	①	②	③	④	⑤
② 일자리의 고용안정성	①	②	③	④	⑤
③ 인사제도(승진, 업무배치 등)	①	②	③	④	⑤
④ 업무량 또는 노동시간(길이)	①	②	③	④	⑤
⑤ 업무의 질(전문성 발휘)	①	②	③	④	⑤
⑥ 물리적 취함(산업재해 등)을 예방하는 근무환경	①	②	③	④	⑤
⑦ 직장 내 성희롱을 예방하는 근무환경	①	②	③	④	⑤
⑧ 인격적 대우	①	②	③	④	⑤
⑨ 장래 발전가능성 및 직업전망	①	②	③	④	⑤
⑩ 가족시간, 개인시간의 확보	①	②	③	④	⑤
⑪ 연월차 휴가 등 법정휴가와 자유로운 이용	①	②	③	④	⑤

**C. 시간선택제 및 대체인력, 교대제 근무**

20. 귀하께서는 현재 근무하시는 시설에 시간선택제 일자리제도가 도입되길 원하십니까?

① 예

② 아니요

21. 만약 귀 시설에서 시간제 일자리를 도입한다면, 시간선택제 일자리로 전환(이직)할 의향이 있으십니까?

① 예 (→21-1번으로 갈 것)

② 아니요 (→21-3번으로 갈 것)

21-1. (의향이 있는 경우) 전환(이직)할 의향이 있으시다면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 ① 유아와 병행하기 위해서
- ② 학업과 병행하기 위해서
- ③ 점진적 퇴직준비 및 퇴직 후 재취업을 위해서
- ④ 건강상의 이유로
- ⑤ 가족과 더 많은 시간을 보내기 위해서
- ⑥ 기타 (적을 것: \_\_\_\_\_)

21-2. (의향이 있는 경우) 어떠한 시간선택제를 선호합니까?

- ① 주5일 근로를 하면서 1일 근로시간이 통상근로시간인 8시간보다 적게 근무하는 방식
- ② 주5일 중 4일 이하로 근무하는 방식

- ③ 주5일 중 일부는 전일근무, 다른 날은 근로시간을 단축하는 방식
- ④ 주당 최저 근무 일수를 충족시키는 정도의 근무 방식
- ⑤ 기타 (적을 것: \_\_\_\_\_)

**21-3. (의향이 없는 경우) 만약 전환(이직)할 의향이 없으시다면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 ① 근로시간을 단축할 필요가 없어서
- ② 현재 보수수준을 유지하기 위해서
- ③ 고용 불안정을 우려해서
- ④ 승진 등 인사고과에 불리할 것 같아서
- ⑤ 복지혜택 등에서 손해를 볼 것 같아서
- ⑥ 기타 (적을 것: \_\_\_\_\_)

**22. 귀 시설에 대체인력 파견이 얼마나 필요하다고 보십니까?**

- ① 전혀 불필요
- ② 불필요
- ③ 보통
- ④ 필요 (→22-1번으로 갈 것)
- ⑤ 매우 필요 (→22-1번으로 갈 것)

**22-1. (필요한 경우) 귀하에게 대체인력이 가장 필요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 ① 연차 유급휴가 사용을 위해
- ② 배우자 출산휴가 사용을 위해
- ③ 병가 사용을 위해
- ④ 경조사 휴가 사용을 위해
- ⑤ 교육 및 훈련을 위해
- ⑥ 기타(적을 것: \_\_\_\_\_)

**【교대제 근무(생활시설 대상자만 응답하시오)】**

**23. 귀하가 재직하고 있는 시설에서는 교대근무제를 실시하고 있습니까?**

- ① 예 (→23-1번으로 갈 것)
- ② 아니오 (→24번으로 갈 것)

**23-1. (교대근무제를 실시하는 경우) 귀 시설의 교대제 근무형태는 다음 중 어떠한 형태입니까?**

- ① 2조 격일제(24시간 근무하고 다음날 24시간 휴무)
- ② 2조 2교대(2개의 근무조가 1일을 전후반기로 나누어 근무)
- ③ 3조 2교대(3개의 근무조가 1일을 전후반기로 나누어 근무하고 1조는 휴무)
- ④ 3조 3교대(3개의 근무조가 1일을 3조로 나누어 근무)
- ⑤ 4조 2교대(4개의 근무조가 1일 전후반기로 나누어 근무하고 2조는 휴무)
- ⑥ 4조 3교대(4개의 근무조가 1일을 3조로 나누어 근무하고 1조는 휴무)
- ⑦ 기타 (구체적으로 적을 것: \_\_\_\_\_)

**23-2. (교대근무제를 실시하는 경우) 귀 시설은 교대제 근무자들에게 주1회 유급휴일을 부여하고 있습니까?**

- ① 예
- ② 때때로 부여
- ③ 아니오

**23-3. (교대근무제를 실시하는 경우) 귀 시설의 교대제 근무형태의 문제점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 ① 시설의 특수성을 고려할 때 근로기준법에 따른 휴일, 휴게, 야간 및 휴일근로 등을 준수하기 어려움
- ② 정부의 연장근로수당 보조금 지원 수준이 낮음
- ③ 생활지도원 1인이 담당하는 이용자 수가 많아짐
- ④ 양질의 인력 채용이 어려움
- ⑤ 근무 숙련도 차이에 따른 적정 근무조 편성의 어려움
- ⑥ 기타 (적을 것: \_\_\_\_\_)

**24. 귀 시설은 4조 3교대제 근무형태 도입이 얼마나 필요하십니까?**

- ① 전혀 불필요 (→25번으로 갈 것)
- ② 불필요 (→25번으로 갈 것)
- ③ 보통 (→24-1번으로 갈 것)
- ④ 필요 (→24-1번으로 갈 것)
- ⑤ 매우 필요 (→24-1번으로 갈 것)
- ⑥ 도입함 (→25번으로 갈 것)

**24-1. (필요한 경우) 4조 3교대제 근무형태 도입을 위해 어떤 부분이 가장 시급히 해결되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우선순위로 2가지만 작성해 주십시오.**

1순위 (            )            2순위 (            )

- ① 사회복지시설의 인력배치기준 개정
- ② 인건비 지원 확대
- ③ 포괄보조금(인건비, 사업비, 경비)을 통합하여 총액지원)으로 지원하여 인력활용의 자율성 부여
- ④ 인건비와 운영비 예산 항목을 분리하여 안정적인 인건비 확보 필요
- ⑤ 전문 인력확보 문제 해결
- ⑥ 기타 (적을 것: )

## D. 모성보호와 일·생활 균형

25. 귀하는 현재 근무기관에서 출산전후휴가를 사용한 적이 있습니까?

- ① 예 (→25-1번으로 갈 것)
- ② 아니오 (→26번으로 갈 것)

25-1. (사용한 적이 있는 경우) 법정휴가기간인 90일을 모두 사용하였습니까?

- ① 예 (90일 모두 사용) (→26번으로 갈 것)
- ② 아니오 (90일 미만 사용) (→25-2번으로 갈 것)

25-2. (90일 미만 사용한 경우)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 ① 추가인력 채용이 불가능하여
- ② 일정기간을 정해서 프로젝트 단위로 업무를 수행하기 때문
- ③ 나의 업무를 대체해 줄 인력이 없어서
- ④ 동료들의 업무량이 늘어나는 것이 부담돼서
- ⑤ 경제적인 이유 때문에
- ⑥ 직장 분위기 때문에
- ⑦ 승진 등에서 불이익이 있을까봐
- ⑧ 기타( )

26. 귀하는 현재 근무기관에서 육아휴직을 사용한 경험이 있습니까?

- ① 예
- ② 아니오 (→27번으로 갈 것)

26-1. (사용한 적이 있는 경우) 본인의 육아휴직기간은 근속기간에 산입되었습니까?

- ① 전체가 근속기간으로 산입됨
- ② 일부 기간만 근속기간에 산입됨
- ③ 근속기간에 산입되지 않았음

26-2. (사용한 적이 있는 경우) 본인의 육아휴직기간은 승진소요기간에 산입되었습니까?

- ① 전체가 승진소요기간으로 산입됨
- ② 일부 기간만 승진소요기간에 산입됨
- ③ 승진소요기간에 산입되지 않았음

27. 귀하의 근무 기관에서는 어느 정도 자유롭게 육아휴직을 신청할 수 있습니까?

- ① 언제든지 마음 놓고 신청할 수 있는 분위기임 (→28번으로 갈 것)
- ② 신청할 수 있는데 부담을 느낌 (→27-1번으로 갈 것)
- ③ 여건상 신청하기 어려움 (→27-1번으로 갈 것)

27-1. 육아휴직을 자유롭게 사용하지 못한다면,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 ① 추가인력 채용이 불가능하여
- ② 일정기간을 정해서 프로젝트 단위로 업무를 수행하기 때문
- ③ 나의 업무를 대체해 줄 인력이 없어서
- ④ 동료들의 업무량이 늘어나는 것이 부담돼서
- ⑤ 경제적인 이유 때문에
- ⑥ 직장 분위기 때문에
- ⑦ 승진 등에서 불이익이 있을까봐
- ⑧ 기타( )

28. 귀 시설의 유연근로제에 관한 질문입니다. 각 항목마다 해당하는 것에 표시해 주십시오.

유연근로제		시행 여부		사용 여부		만약 유연근로제를 활용한다면, 가장 선호하는 형태 (1가지 선택)
		시행	미시행	사용	미사용	
① 탄력적 근로시간제	일이 많은 주의 근로시간을 늘리는 대신 다른 주의 근로시간을 줄여 평균적으로 주40시간의 법정 근로시간을 맞추는 제도					
② 선택적 근로시간제	일정 기간(1개월 이내) 단위로 정해진 총 근로시간 범위에서 업무의 시작과 종료 시각, 하루 근로시간을 노동자가 자율로 결정하는 제도					
③ 사업장 밖 간주근로제	근로시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사업장 밖에서 일해 근로시간 산정이 어려운 경우 소정 근로시간 또는 업무수행에 통상 필요한 시간을 근로한 것으로 인정하는 제도					
④ 보상휴가제	연장·야간·휴일노동에 대해 보수 대신 유급휴가를 부여하는 제도					

29. 다음은 귀하 재직 근무기관의 일·생활 균형 관련 제도 활용 내용입니다. 해당하는 것에 표시해 주십시오.

문항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보통이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① 우리 기관에서는 직원들이 일·생활 균형지원제도를 사용하도록 독려한다.	①	②	③	④	⑤
② 우리 기관은 상황에 따라 근무시간을 유연하게 조정할 수 있다.	①	②	③	④	⑤
③ 우리 기관은 연차 사용이 자유로운 편이다.	①	②	③	④	⑤

### E. 업무량과 전문성

30. 귀하의 업무량의 변화와 전문성에 대한 외부의 요구는 최근 3년간(2016년~2018년) 어떠하다고 생각하십니까? 해당하는 것에 표시해 주십시오.

항목	감소하는 편이다	비슷하다	증가하는 편이다
① 업무량			
② 전문성에 대한 요구			

31. 현재 귀하의 업무량과 전문성 수준에 대해, 스스로 어떠하다고 생각하십니까? 해당되는 번호에 표시해 주십시오.

항목	매우 낮음 < ----- 보통임 ----- > 매우 높음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⑩
① 업무량 수준										
② 전문성 수준										



32. 귀하는 지금의 일을 계속하기 위해 새로운 능력이나 지식을 익힐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 ① 전혀 필요 없다                      ② 필요 없는 편이다                      ③ 보통이다  
 ④ 필요한 편이다                      ⑤ 매우 필요하다

33. 귀하가 지금 하고 있는 일에 도움이 되는 능력이나 지식을 익히는 가장 주된 방법은 무엇입니까?

- ① 의무교육(보수 및 직무교육)                      ② 의무교육 외 현재 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된 외부교육  
 ③ 학회 및 세미나 참석 등을 통한 교육                      ④ 관련 직능단체 등에서 실시하는 교육  
 ⑤ 대학원 진학                      ⑥ 독학(개인적인 학습활동)  
 ⑦ 학원, 평생교육기관 등을 통한 교육                      ⑧ 기타(                      )

34. 귀하는 2018년도에 의무교육(법정 보수교육, 필수 직무교육 등)을 포함하여 직무관련 교육에 어느 정도 참여하십니까?

- ① 교육 참여 횟수                      총 \_\_\_\_\_회                      ② 교육 참여 시간                      총 \_\_\_\_\_시간

35. 귀하의 교육 참석에 어려움이 있으십니까?

- ① 있다                      ② 없다 (→36번으로 갈 것)

35-1. 교육 참석이 어려운 가장 큰 이유는 무엇입니까?

- ① 근무로 인해 교육 시간 배정이 어려움                      ② 대체인력이 없어서  
 ③ 교육내용이 적절한 것이 없어서                      ④ 비용이 부담스러워서  
 ⑤ 교육장소가 멀어서                      ⑥ 개인 휴가를 사용해야 돼서  
 ⑦ 교육에 대한 관리자의 인식 부족                      ⑧ 기타(                      )

36.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교육을 활성화하기 위한 방안으로 무엇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우선순위로 2가지만 작성해 주십시오.

1순위(   ) 2순위(   )

- ① 현장성 및 시대성을 반영한 교육주제 개발                      ② 교육의 횟수 및 시간 증대  
 ③ 교육인력의 질 향상                      ④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근무환경 개선(업무량 조정)  
 ⑤ 교육비 지원 강화                      ⑥ 교육에 우호적인 조직문화(교육에 대한 인정과 보상)  
 ⑦ 교육에 대한 홍보 강화(정보 접근성 확대)                      ⑧ 참여 가능한 다양한 교육시간 개발  
 ⑨ 참여 가능한 다양한 교육매체(온라인 등) 개발                      ⑩ 종사자가 희망하는 맞춤형 교육 우선 반영  
 ⑩ 기타 (                      )

---

## F. 일반사항

---

37. 귀하의 연령은 어떻게 되십니까?

만 \_\_\_\_\_세 (출생년월 \_\_\_\_\_년 \_\_\_\_\_월)

38. 귀하의 성별은 무엇 입니까?

- ① 여자                      ② 남자

39. 귀하의 결혼 상태는 어떻게 되십니까?

- ① 기혼                      ② 미혼(이혼, 사별 등 포함)

40. 귀하의 최종학력은 어떻게 되십니까?

- ① 고졸 미만
- ② 고등학교 졸업
- ③ 전문대졸 및 대학중퇴
- ④ 4년제 대학졸업
- ⑤ 대학원졸업 이상

41. 귀하가 직무와 관련하여 소지하고 있는 자격증은 무엇입니까? 해당되는 것에 모두 표시해 주십시오.

- 0) 자격증 없음
- 1) 사회복지사 1급
- 2) 사회복지사 2~3급
- 3) 정신보건사회복지사
- 4) 의료사회복지사
- 5) 학교사회복지사
- 6) 특수교사
- 7) 청소년지도사
- 8) 직업재활사
- 9) 간호사
- 10) 간호조무사
- 11) 물리치료사
- 12) 요양보호사
- 13) 정신보건간호사
- 14) 정신보건임상심리사
- 15) 의사
- 16) 영양사
- 17) 치료사(심리,언어,작업 등)
- 18) 보육교사
- 19) 상담원(가정폭력,성폭력)
- 20) 통번역사
- 21) 언어치료사/언어재활사
- 22) 조리사
- 23) 시설관리관련 자격(방화관리자, 전기 등)
- 24) 기타 (적을 것:\_\_\_\_\_)

42. 귀하가 근무하고 계시는 시설 유형은 무엇입니까?

- ① 노인복지시설
- ② 아동복지시설
- ③ 장애인복지시설
- ④ 정신보건시설
- ⑤ 노숙인시설
- ⑥ 사회복지관·결핵·한센시설
- ⑦ 지역자활센터
- ⑧ 성매매피해지원시설
- ⑨ 성폭력피해보호시설
- ⑩ 가정폭력보호시설
- ⑪ 한부모가족복지시설
- ⑫ 다문화가족지원센터
- ⑬ 청소년복지시설
- ⑭ 기타 (적을 것:\_\_\_\_\_)

43. 귀하가 근무하고 계시는 시설의 규모는 어떠합니까?

- ① 5인 미만
- ② 10인 미만
- ③ 20인 미만
- ④ 30인 미만
- ⑤ 40인 미만
- ⑥ 40인 이상

44. 근무하고 계시는 시설에서 귀하의 직위는 무엇입니까?

- ① 최고관리자(원장, 관장, 센터장, 소장 등)
- ② 상급관리자(사무국장, 부장, 실장 등)
- ③ 중간관리자(과장, 팀장 등)
- ④ 초급관리자(선임, 주임, 대리 등)
- ⑤ 실무직원(직위가 없는 모든 직원)
- ⑥ 기타(적을 것:\_\_\_\_\_)

45. 근무하고 계시는 시설에서 귀하의 직종은 무엇입니까?

- ① 사회복지직(생활지도원 포함)
- ② 일반직, 사무직
- ③ 기능직, 시설관리직
- ④ 보건 의료직
- ⑤ 기타 (적을 것:\_\_\_\_\_)

46. 귀하의 주요 업무내용은 무엇입니까? (한 가지만 선택)

- ① 직접적인 서비스 제공(프로그램 개발 실행, 서비스 대상자 관리 등)
- ② 운영지원(서무·회계, 시설관리, 운전, 취사, 환경미화 등)
- ③ 관리(시설관리 및 운영, 종사자 관리 및 슈퍼비전 등)

♣ 설문에 끝까지 응답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참고> 직종에 따른 경력환산

구분	환산율	인정대상경력
사회복지 시설경력	100%	1. 사회복지시설에 근무한 경력 ( '2019년 사회복지시설 관리안내' 참고) (노인복지시설, 아동복지시설, 장애인복지시설, 정신보건시설, 노숙인시설, 사회복지관·한센시설, 지역자활센터, 성매매피해지원시설, 성폭력피해보호시설, 가정폭력보호시설, 한부모가족복지시설,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청소년복지시설) 2. 2002년 이후 조건부시설로 신고한 시설에서 종사자로 근무한 경력 (단, '05.7.31까지의 근무 경력만 인정) 3.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대체인력으로 근무한 경력 ('18.1.1부터 근무경력으로 인정하되, 경력합산은 '19.1.1부터 적용)
유사경력	80%	1. 물리(작업)치료사, 간호(조무)사, 요양보호사, 정신보건전문요원, 사회복지사, 영양사, 조리사, 언어재활사로서 ① 의료법에 의한 의료기관 「지역보건법」에 의한 보건소(보건의료원 포함)에서 관련자격 (면허)증을 소지하고 동종 직종에 근무한 경력 ② 「초중등교육법」, 「고등교육법」, 「평생교육법」,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등의 법 률에 의한 각급 학교에서 관련 자격(면허)증을 소지하고 동종 직종에 근무한 경력 ③ 법령에 의해 채용이 의무화된 사업장에서 관련 자격(면허)등을 소지하고 동종 직종에 근무한 경력 2. 특수학교교사 자격증 취득 후 특수학급에 근무한 경력 3. 공무원으로서 사회복지사업관련 부서에 근무한 경력(사회복지전담공무원 근무경력 등) 4. 가정위탁지원센터에서 직원의 자격으로 채용되어 근무한 경력 (사회복지시설로 인정되기 전의 근무경력) 5. 소정의 자격을 소지하고 보건복지부 보건복지콜센터에 근무한 경력 6. 아동보호전문기관에서 직원의 자격으로 채용되어 근무한 경력 (사회복지시설로 인정되기 전의 근무경력) 7. 아동·청소년 성교육 전문기관에서 직원의 자격으로 채용되어 근무한 경력 8. 청소년 쉼터·자립지원관·치료재활센터에서 직원의 자격으로 채용되어 근무한 경력 (사회복지시설로 인정되기 전의 근무경력) 9. 통합서비스(드림스타트) 민간전문인력(직원)으로 채용되어 근무한 경력 10. 사회복지협의회에서 직원의 자격으로 채용되어 근무한 경력 11. 한국사회복지사협회에서 직원의 자격으로 채용되어 근무한 경력 12. 기부식품제공사업장에서 사회복지사 자격증으로 소지하고 근무한 경력 13. 자원봉사센터에서 사회복지사 자격증을 소지하고 근무한 경력 14. 사회복지통합서비스전문요원(통합사례관리사)로 통합사례관리업무를 수행한 경력 15. 지역사회복지협의체에서 사회복지사 자격증을 소지하고 상근간사로 근무한 경력 16. 보건복지부 장관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법인으로서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의 사회복지 지사업을 수행하는 사단·재단법인에서 직원으로 상근한 경력 17. 한국사회복지공제회에서 사회복지사 자격증을 소지하고 근무한 경력 18. 장애인법에 따라 활동지원기관에서 전담인력으로 채용되어 근무한 경력 19. 청소년상담복지센터에서 직원의 자격으로 채용되어 근무한 경력 20.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라 사회복지법인에서 직원의 자격으로 채용되어 근무한 경력 21. 국민기초생활법에 따라 광역자활센터에서 직원의 자격으로 채용되어 근무한 경력 22. 정신보건법에 따른 정신보건전문요원 자격증을 소지하고 정신보건센터(정신건강증진 센터)에서 근무한 경력 23. 노인일자리지원기관에서 직원의 자격으로 채용되어 근무한 경력 (사회복지시설로 인정되기 전의 근무경력) 24. 장애인권익옹호기관에서 직원의 자격으로 채용되어 근무한 경력 25. 피해장애인쉼터에서 직원의 자격으로 채용되어 근무한 경력 (사회복지시설로 인정되기 전의 근무경력) 26. 입양기관에서 직원의 자격으로 채용되어 근무한 경력

		<p>27. 지역적응센터에서 사회복지사 자격증을 가지고 전담인력으로 근무한 경력</p> <p>28. '독거노인·중증장애인응급안전알림서비스 사업안내' 지침 사업수행기관(지역센터)에 채용되었고, 경력증명서상 직무가 '거점응급안전관리요원 또는 응급관리요원'으로 명시된 근무경력</p> <p>29. 노인복지법에 따라 취약 독거노인에 대해 지원하는 돌봄 사업에 채용되어 근무한 경력</p>
<p>군 복무 관련 경력</p>		<p>군 복무경력은 병적증명서상 실제 복무한 경력을 인정하되, 3년까지만 인정함.</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제대군인</li> <li>2. 병역법에 따라 전환복무를 한 사람</li> <li>3. 종전 병역법에 따라 복부하고 소집해제된 공익근무요원</li> <li>4. 종전 병역법에 따라 소집되어 복무하다 소집해제된 방위병</li> <li>5. 종전 병역법에 따라 예편된 학도의용군</li> </ol>